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10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 박선원·허종식·박정현

조인철・강득구・허 영

이기헌 · 김병주 · 추미애

조 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 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 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 · 25전쟁 전몰 ·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상응

하는 보상과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으로 지급한다.
- ⑦ 제1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부모의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녀 2.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 제> 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 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 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 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 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신 설> 의3제1항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

<신 설>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중한 사람이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③ (생 략)

위자 1명에게는	는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으로	지급한
<u>다.</u>		

⑦ 제1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에게 부모의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l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
당) ①
<u><단서 삭제></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